



: 2016-09-27

서울 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83474 출연금 환수처분 등 취소의 소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피 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변 론 종 결 2016. 7. 22.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0. 원고 A 주식회사에 한 850,000,000원의 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
의 참여제한처분과 원고 B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3년 7월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아 원고 B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C'의 국산화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과제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 합계 850,000,000원(2014년도 425,000,000원, 2015년도 4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 중 43,236,900원(1차 연도 32,647,980원, 2차 연도 10,588,920원)이 연구개발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2016. 1. 20. 원고 회사에 850,000,000원의 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원고 B에게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5. 10. 1. 원고들에게 사업비를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과제 수행을 중단하고,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처분이 이루어 질 것임을 통지하는 취지의 평가결과 통보를 한 사실(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회사는 2015. 10. 15. 피고에게 위 평가결과 통보에 대하여 사업비를 연구개발 목적 이외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



였으나 피고는 2015. 11. 16.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원고 회사에 통지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 19. 평가결과를 확정 통지하고, 2015. 1. 20.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④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및 이유로 '과제 수행을 위해 구입한 부품 및 장비를 과제수행과 무관하게 상용제품의 교체용 부품 또는 장비로 판매하는 등 사업비를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전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하여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이 이루어 질 것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사업비를 연구개발 목적 이외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등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인식하고, 불복절차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 절차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위해 구입한 부품을 원고 회사의 판매용 장비의 부품으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비 43,238,900원을 횡령하였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②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가 판매처 확인도 없이 수사를 의뢰하였고, 71개 부품이 감사 당시 개수대로 보관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제 수행을 위해 구입한 부품을 판매용 제품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을 제5,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비를 연구개발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사업비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원고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였는데, 2015. 6. 25.경 원고에게 2015. 7. 16.과 2015. 7. 17.에 2회에 걸쳐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사업비 적정 관리여부를 점검할 예정임을 알리고, 점검에 대비하여 준비할 사항을 미리 고지하였다.

피고는 관련 기술 분야 전문가 1명, 소속기관 회계사 1명 및 변호사 1명을 외부 전문가로 섭외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비 적정 관리여부를 점검하면서, 원고 회사가 구매하였다고 기록한 목록의 장비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원고 회사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전액에 관하여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차 방문시에는 원고 B에게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조사를 마친 후 원고 회사에 사업비로 구입한 후 과제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판매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B은 2015.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과제와 관련된 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로 구입한 내역 중 일부를 판매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용도 외 사용 내역을 정리한 표도 함께 첨부하였다).

피고는 2015. 7. 28.과 2015. 7. 29. 원고 B이 보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회



사를 다시 방문하여 구매 시기에 비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시설이나 훼손이 심한 장비들을 확인하고, 그 항목을 사업비 유용 내역에 포함시켰다. 원고 B은 2015. 7. 29.경 1차 연도 사업비로 집행한 42개 품목 36,647,978원과 2차 연도 사업비로 집행한 29개 품목 10,588,897원 합계 71개 품목 43,236,897원을 연구개발용도 이외에 회사의 영업용 제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확인서에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위와 같이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실제 회사에 보관 중인 부품 등을 직접 확인한 피고의 조사 과정과 용도 외 사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 B의 이메일 및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비로 구입한 부품 등 중 일부를 과제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가 감사 결과에 따라 출연금이 환수될 수 있고,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B이 작성한 확인서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과제와 무관하게 사용된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구매일자, 수입국가, 수량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경우도 아니다.

② 원고들은 일부 부품 등에 대해서는 회사 지하창고에 따로 보관 중이었는데 이를 몰라서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현장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것을 고지한 후 두 차례(각 2일씩)에 걸쳐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의 안내를 받거나 원고 B이 제출한 목록 등을 기초로 하여 부품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현장 조사 당시 충분히 부품 등을 과



제수행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과제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원고 B이 작성한 확인서 기재 내용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들은, 문제된 금액이 정부출연금 중 약 5%에 불과하고, 다른 부품 등을 이용하여 과제수행을 할 수 있으며, 1, 2차년도 개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수업체로 평가받았음에도 회사의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 회사의 2015년도 과제수행에 관하여 개발품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 인프라가 취약하고, 목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수치 제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고 평가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 회사의 2016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연구역량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여 목표한 성과를 내기 미흡하다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제수행에 대해서도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우수업체로 평가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 회사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당초 과제를



: 2016-09-27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반면 원고 회사는 그 동안의 성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